

※ 국토계획법, 41p

IV.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 입안제안 사항★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후단).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영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감평 2009·2017·2018·2019·2023, 중개 2018·2023)
2.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영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감평 2013·2017·2023·2024, 중개 2017·2018·2023)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영 제19조의2 제1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중개 2019·2021·2023)
 - 나.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중개 2018)

【암기】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입체/기반 - 지구/개발)

1.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기반 시설
2.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국토계획법, 61p

III.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1. 주민의 입안 제안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의2 제1항 각 호(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35조의3 제1항 전단).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5조의3 제1항 후단).
-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유지 및 공유지는 제외한다(영 제29조의2 제1항).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2.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과 함께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관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2.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 제29조의2 제4항 :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內)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면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안자 외(外)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35조의3 제2항 본문).
- ② 다만,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5조의3 제2항 단서).

3. 제안서 검토·평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 제안서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영 제29조의2 제7항 : 제안서를 검토·평가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용도구역 지정 목적의 타당성, 기반시설 확보의 적정성,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다(법 제35조의3 제3항).

4. 절차

- ① 법 제35조의3제1항(주민 입안 제안)에 따른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영 제29조의2 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영 제29조의2 제2항 단서).
- ②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1항(주민 입안 제안)에 따른 제안을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영 제29조의2 제3항).
-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2항 본문(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 내용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영 제29조의2 제5항 전단). 이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영 제29조의2 제5항 후단).
 1.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관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 ④ 공고된 제안 내용의 개요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영 제29조의2 제6항).
-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35조의3 제4항).

4. 비용의 부담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35조의3 제5항).

※ 국토계획법, 61p

IV.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35조의4).

1. 법 제35조의2 제1항 각 호(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35조의2 제1항 각 호(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29조의3)
 -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 나.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 다.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內)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라.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外)의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마.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국토계획법, 63p

Ⅶ.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 해당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한 내용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법 제19조제1항 각 호(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인구의 배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영 제29조의6 :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35조의7 제2항).

※ 국토계획법, 74p

5. 도시혁신구역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0조의3 제1항).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영 제32조의3)

가.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나.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국토계획법, 76p

6. 복합용도구역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0조의4 제1항).

1.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2.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영 제32조의4)

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국토계획법, 77p

7.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1)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0조의5 제1항).

1. 도시·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 제32조의5 :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이 조에서 “건축제한”이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영 제32조의5 제2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40조의5 제2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40조의5 제2항 단서).
- ② 법 제40조의5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법 제40조의5 제3항).
- ③ 법 제40조의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영 제32조의5 제2항).
 1.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 가. 도시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2.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건폐율은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용적률은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4.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 가. 「건축법」 제60조(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에 따라 제한된 높이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 나.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 국토계획법, 165p

4.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86조의2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법 제80조의4).

5.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영 제86조의3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법 제80조의5 제1항).
- ②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제1항 각 호 및 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용 용적률)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법 제80조의5 제2항).

※ 부동산가격공시법, 297p

6.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2) 조사·산정 절차

- ①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46조 제1항).
- ② **부동산원**은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영 제46조 제2항).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영 제46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영 제46조 제3항 후단).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영 제46조 제4항).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⑤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영 제46조 제5항).

※ 부동산등기법, 457p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 관할등기소

-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법 제7조 제1항).
-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규칙 제5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법 제7조 제2항).

2.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7조(관할등기소)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법 제7조의2 제1항).
- ② 법 제제7조(관할등기소)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법 제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법 제78조(공동저장의 등기)제4항 [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법 제7조의2 제2항).
- ③ 제1항에 따른 관할 등기소에서의 등기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 제7조의2 제3항).

3.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제7조(관할등기소)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법 제7조의3 제1항).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 제7조의3 제2항).

5. 등기사무의 정지 등

-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6. 등기사무의 처리

-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감평2024)
- ②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감평 2024)
-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 라 한다)를 둔다(규칙 제9조 제1항).

III. 등기신청의 방법 및 취하 (466p)

1. 등기신청의 방법

(3)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 ① 등기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 제24조 제1항 제2호).

IV.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468p)

2. 일괄신청

-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법 제25조 단서·규칙 제47조 제1항).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 『여러 개』로 개정됨) (일괄신청은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감평 2010·2014, 중개 2018)(등기원인이 다를 때에도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4.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VIII. 신청의 각하★(471p)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감평 2012)(등기권리자의 표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2절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78p)

1. 등기사항

1.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표/점+원인→소/지→건물/번호)

3. 소재, 지번 및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중개 2020)

2.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496p)

- ②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2항).~~
- ③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505p)

1.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법 제48조(권리 등기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권리자)에서 규정한 사항 **외(外)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81조 제1항).

제5장 이의 (518p)

I.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00조).(감평 2000·2019, 중개 2020)

II. 이의절차★

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101조).(감평 2017·2019, 중개 2023)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IV. 등기관의 조치★

-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법 제103조 제2항).(감평 2000·2017·2023, 중개 2020)(7일 이내×)
- ③ 등기를 마친 후(後)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103조 제3항).

